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1. . .
발 의 자	송용자 의원 외 9명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용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송용자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안주찬 · 윤종호 · 이지연 · 장세구
최경동 · 홍난이
(10인)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미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기 타 : 조례안 예고(2021.8.27.~9.3.)결과 의견 없음

구미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2.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

-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미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저. (생략)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후략)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 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갇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갇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갇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사람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후략)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소요가 예상됨(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며, 관련 단체의 사업지원 범위를 알 수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혜자(054-480-5103)